

제153호

행정명령

**BRONX, KINGS, NASSAU, NEW YORK, ORANGE, PUTNAM, QUEENS, RICHMOND, ROCKLAND, SUFFOLK 및 WESTCHESTER 카운티와 인접 지역에 재산 선포**

여러 주에 걸친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노리스터로 인한 위험한 겨울 날씨 조건이 2016년 1월 23일경과 그후 지속적으로 뉴욕시, Long Island와 기타 여러 카운티에 존재합니다. 눈보라 조건 가능성으로 뉴욕시와 Long Island에는 총 18~24인치의 강설량이 예보되어 있습니다. 만조시 Long Island에는 보통 정도의 해안 침수도 가능하며 30~40 mph의 풍속과 최대 55 mph의 돌풍이 산발적 정전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. 이 노리스터는 뉴욕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Bronx, Kings, Nassau, New York, Orange, Putnam, Queens, Richmond, Rockland, Suffolk 및 Westchester 카운티와 그 인접 지역의 필수 대중교통, 유틸리티 서비스와 공중 보건 및 공공 안전 시스템에 임박한 위험을 제기합니다;

이 사태는 전반적 정전, 보통~심한 해안 침식 및 침수, 주택, 아파트, 업소 및 공공 및 민간 재산의 손상을 야기하고, 나무를 손상하고 뿌리를 뽑고, 공중 보건 및 안전에 위협을 계속 제기할 수 있습니다;

**이제, 그러므로, 본인 ANDREW M. CUOMO** 뉴욕주 지사는 뉴욕주의 헌법 및 법률이 본인에게 부여한 권한에 의거, 해당 지역의 지방정부들이 적절히 대응할 수 없는 재난 사태가 임박했음을 확인합니다. 그러므로, 뉴욕주 헌법과 행정부법 제2-B조 제28항이 본인에게 부여한 권한에 의거, 본인은 Bronx, Kings, Nassau, New York, Orange, Putnam, Queens, Richmond, Rockland, Suffolk 및 Westchester 카운티의 영토 경계 내와 그 인접 지역에 2016년 1월 23일부로 주 재난 비상을 선포합니다,

**또한,** 행정부법 제2-B조 제29항에 의거, 본인은 주 종합 비상 관리 계획의 시행을 지시하고, 2016년 1월 23일부로, 주 비상관리실, 보건부, 교통부, 주 경찰본부, 육해군과, 환경보건부, 교정커뮤니티감독부, 공공서비스위원회, 화재예방통제실, 노동부, 공원휴양사적보전실, 총무실, 뉴욕주립대학교, 고속도로청, 향토안보비상과, 기타 필요한 주 기관, 및 미국 적십자사가 주정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 재난에 대응하고 복구하는 데 있어서 해당 지방 정부와 개인을 지원하며 공중 보건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기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승인합니다.

**또한,** 본 선언은 연방 자동차운송업자 안전 규정(FMCSR)의 파트 390~399의 완화를 규정한 49 C.F.R. 390.23(a)(1)(A)의 요건을 만족합니다. 그러한 FMCSR 완화는 유틸리티 전력 복원 요원을 신속하게 뉴욕주로 이동시키기 위해 필요합니다.

**또한,** 본 선언은 비상관리 지원 협정의 사용을 승인하는 행정부법 29-g의 요건을 만족하고, 행정부법 29-g(3)(c)의 요건을 만족합니다.

**또한**, 본인은 향토안보비상본부장 John Melville을 이 사태를 위한 주 조율관으로 임명하였습니다.

**또한, 본인, ANDREW M. CUOMO** 뉴욕주 지사는 주 비상시 법률, 조례의 특정 조항, 명령, 규칙 또는 어느 기관의 규정 또는 그 일부의 준수가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방해, 저해 또는 지연시킬 경우, 그러한 조항을 일시 정지시키기 위해 행정부법 제2-B조 제29-a항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, 다음 법률을 본 행정명령일부터 2016년 1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일시 정지시킵니다:

고속도로법 제38조 제(1), (2) 및 (3)항과 경제개발법 제4조 C항, 교통부 장관이 비상 계약 체결을 승인 및/또는 계약에 설계 및 시공 용역을 통합하며 필요시 그러한 용역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한도내;

공공건축법 제9조 제(2) 및 (4)항과 경제개발법 제4조 C항, 총무실장이 비상 계약 체결을 승인 및/또는 계약에 설계 및 시공 용역을 통합 및/또는 필요시 그러한 계약과 용역을 60만 달러 이상의 임계치에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한도내;

주 재정법 제97-G조, 총무실장 또는 향토안보비상본부장이 재난 비상에 대응하고 복구하는 데 있어서 해당 지방 정부, 개인 및 기타 비주 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건물 설계 및 시공 용역을 포함하여 음식, 용품, 용역 및 장비를 구입하거나 또는 중앙 조달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한도내.

주 재정법 제112조, 주 헌법 제V조 제1항과 일치하는 범위에서, 그리고 교통부 장관, 총무실장, 또는 향토안보비상본부장이 주 계약에 추가 공사, 부지 및 시간을 추가하거나, 공공건축법 제3조에 의거 주 작업의 이전 및 지원을 위한 비상 계약을 체결하거나 리스를 체결하거나, 공공건축법 제9조에 의거 비상 계약을 체결하거나, 주 재정법 제136-a조에 의거 전문 용역을 위한 비상 계약을 체결하거나, 그리고 주 재정법 제163조에 의거 상품, 용역, 기술 및 자재를 위한 비상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한도내;

주 재정법 제136-a조, 교통부 장관 또는 총무실장이 한 계약에 설계와 시공 용역을 통합 및/또는 설계 및 시공 감리 용역을 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한도내;

주 재정법 제163조 및 경제개발법 제4-C조, 교통부 장관, 총무실장 또는 향토안보비상본부장이 필요한 상품, 용역, 기술 및 자재를 표준 고지 및 조달 프로세스를 준수하지 않고 구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한도내;

환경보전법 제8조, 뉴욕주 규정집 타이틀 17의 파트 15 및 타이틀 6의 파트 617, 교통부 장관, 총무실장 또는 향토안보비상본부장이 구조물의 교체, 재활 또는 재건축을 위한 공사가 즉각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한도내;

2015년 법률 제60장의 파트 F, 교통부 장관 또는 총무실장이 규정된 조달 절차를 따르지 않고 설계-시공 및 최상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용하는 한도내.

**또한**, 본인은 다음 법률을 본 행정명령일부터 2016년 1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일시 수정합니다:

행정부법 제24조; 하이웨이법 제104 및 346조; 차량교통법 제1602, 1630, 1640, 1650, 1660조; 운송법 제14조 제(16)항; 빌리지법 제6-602 및 17-1706조; 일반시법 제20(32)조; 2급시법 제91조; 뉴욕시 행정법 제19-107(ii)조; 뉴욕주 규정집 타이틀 21의 제107.1조, 주지사에게 도로, 하이웨이 및 거리의 교통과 차량 움직임을 규제할 권한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내.

올버니시에서 본인 자필과 주 옥새로 이천일십육년  
일월 이십삼일에 발령.

주지사

주지사 비서